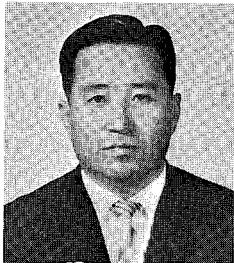


知的所有權의 保護推移와 業界의 対応



丘 明 煥
特許庁 審査 4 局 電子審査擔當官

최근에
새로이 인식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법적보호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어떻게 정립하여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무역마찰에 효율적으로 대비해 나가고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강화해 나아가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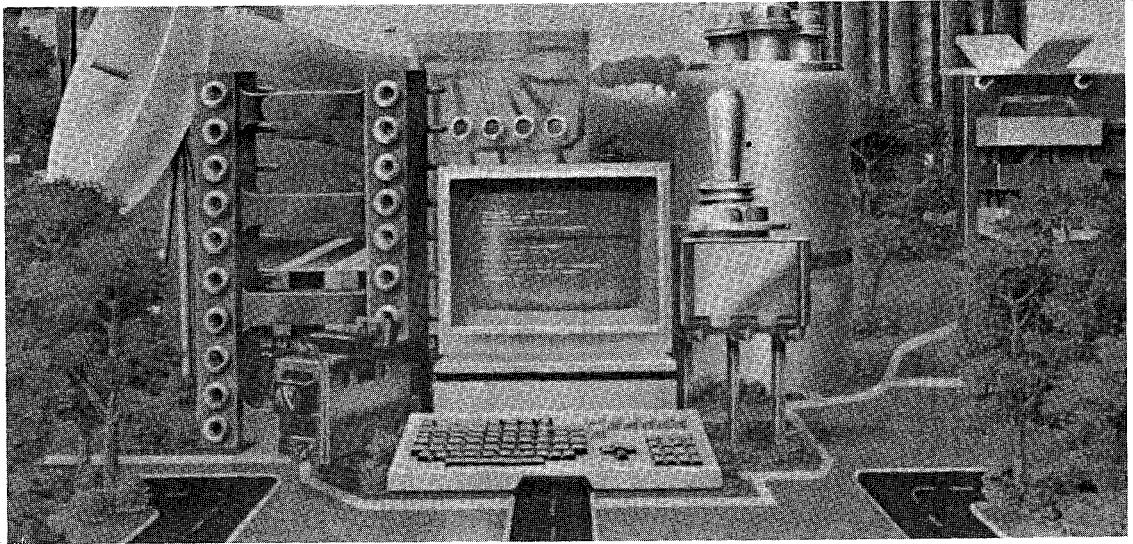
1. 序 言

최근 知的所有權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되는데, 이는 知的 노력의 결과에 대한 權利保護에의 관심이 世界的으로 점점 높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최근들어서 著作權保護 및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문제, 物質特許문제, 有名商標 도용방지문제 등등 一連의 知的所有權과 관련된 問題들로 말미암아 先進國과의 마찰이 격화되면서 新聞紙上에 이와 관련한 記事가 빈번히 오르내림에 따라 知的所有權과 관계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아니라 여러 階層에 걸쳐서 그 관심이 크게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知的所有權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知的所有權이 일반 有体財産權과 마찬가지로 無体財産權으로서 중요한 經濟的 가치를 갖는 것으로 認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通信수단과 運送수단 및 大量 生産수단의 發達에 의하여 한 사람의 知的 노력의 결과의 영향이 파급되는 效果가 크게 된 것도 그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本稿는 이러한 知的所有權에 관하여 그 種類와 領域에 대하여 소개하고 世界各國의 知的所有權의 保護 推移를 살펴본 다음 이에 대한 業界의 対応方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知的所有權의 種類

知的所有權은 人間의 지적노력의 結果에 의해 형성되는 無体財産權을 총칭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知的所有權은 크게 둘로 나누면 著作權과 工業所有權으로 나눌 수 있고 工業所有權에는 전통적으로 特許, 實用新案, 意匠 및 商標가 있고 이 이외에 최근 微生物 特許가 여기에 추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저작권분야에 컴



지적소유권은 전세계적으로 중요 경제가치로 인식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퓨터 프로그램 保護가 先進諸國들에 의해 著作權的 보호로 거의 결론지어졌고, 반도체 집적회로, 리실계 보호문제가 국제적으로 한창 논의중에 있다.

가. 著作權

著作權은 기본적으로 著作者的 저작물과 예술가의 예술작품 및 공연활동을 보호하여 사회전체의 文化發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目的이 있다.

著作權制度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경 유럽에서 인쇄술이 發明되면서부터라고 한다. 이것은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 著作物의 대중화가 용이하여졌고 따라서 불법복사에 대비한 著作者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著作權法은 1710年 英國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이후 각국의 著作權法이 완비되어 감에 따라 著作權의 國際的 保護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세기 말 著作權에 관한 國際條約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1886年 성립을 본 「文學 및 藝術 著作物 保護에 관한 베른 協約(Berne Convention)」이다. 이와 유사한 또하나의 國際著作權 協약으로는 1952年 성립된 「萬國著作權 協約(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이다. 이들 協약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어느 하나에 가입하거나 둘 다 가입하거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협

약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

나. 工業所有權

工業所有權이라 함은 知的所有權이라는 광범위한 領域에서 특히 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產業的 無體財產權을 말하는데 전통적으로 特許, 實用新案, 意匠, 商標에 관한 独占的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特許權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중에 고도한 것으로된 發明을 보호해주는 權利이고, 實用新案權은 발명보다 技術的 水準이 낮은 고안을 보호한다. 意匠權은 산업적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며, 商標權은 상품이나 상호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 또는 기호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工業所有權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그중에서 특히 特許) 科學技術의 발전이 國家發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認識되었기 때문이다. 최초의 特許制度는 英國의 전매조례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보다 더 이전에도 특허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고 있어, 이것으로 미루어 特許制度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오늘날 先進國들의 경우를 보면 모두 오랜 역사와 잘 완비된 특허제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特許保有 건수도 선진국들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工業所有權에 관한 國際協約으로는 1883년에 성립된 「工業所有權保護에 관한 파리協約(Paris

Convention)」이 있는데 WIPO에서 권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80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다. 著作權과 特許權의 비교

著作權과 特許權은 다같이 인간의 지적노력의 결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나 그 性格, 權利內容, 權利發生要件, 保護對象, 保護期間面에서 매우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를 비교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1) 權利의 性格

著作權은 타인의 著作物을 복사하거나 베끼지만 않고 타인의 著作物과 동일한 내용의 著作物을 獨自的으로 창작한 경우에 두 저작자의 권리가 모두 保護될 수도 있다는 제한적인 배타적 權利임에 比하여, 特許權은 남의 것을 복사하였든 아니면 독자적으로 發明하였든 관계없이 이미 發明된 것과 동일한 것에 대하여는 保護를 부여하지 않고 최초 發明된 것(先發明主義) 또는 최초 出願된 것(先出願主義)에 限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절대적 배타성을 갖는 獨點權이다. 그러므로 權利의 성격으로 볼때 特許權은 著作權에 比하여 훨씬 강력한 權利가 된다.

(2) 權利內容

著作權의 權利內容은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즉, 著作者的 개인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人格權(公表權, 原狀維持權 등)과 財産的 權利를 保護하기 위한 財産權(複製, 翻譯, 配布, 發行 權利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比하여 特許權은 財産權만 존재한다. 즉 特許가 부여된 發明에 의한 물건의 生産, 使用, 販賣, 輸入, 擴布 등을 獨点的으로 행사할 權利이다.

(3) 權利發生要件

著作權은 權利發生에 있어서 아무런 요건이 필요없다. 즉 創作의 完成과 동시에 權利가 發生된다는 뜻이다. 다만 權利移轉이나 그밖의 權利變動에 관한 法的 처리와 창작의 분명한 추정을 위해 登錄을 하기도 하지만 이때 심사나 그밖의 까다로운 절차가 없다.

그러나 特許의 경우에는 발명이 공지되기 전에 關係機關(特許廳)에 出願을 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新規性, 進歩性 및 成立性이 認定되

었을 때 비로소 특허가 허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著作權 취득의 경우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그 기간도 짧고 절차가 간단함에 比하여 特許權 취득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며 기간도 오래 걸린다. (2~3년)

(4) 保護對象

著作權의 경우 그 보호대상은 著作物의 표현 형식 그 자체이다. 이에 比하여 特許權의 보호대상은 發明에 포함된 기술사상(아이디어)이다. 그러므로 特許權에 의한 권리가 저작권에 의한 권리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權利범위도 훨씬 넓다.

(5) 保護期間

保護期間에 있어서 特許는 15년(우리나라 87년 개정특허법)임에 比하여 著作權은(우리나라 저작권 87년 개정저작권법) 著作者 死後 50年으로 되어 있다.

3. 知的所有權 領域의 擴張

科學技術이 發展함에 따라 知的所有權의 개념도 擴張되어 새로운 지적소유권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代表的인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와 半導體集積回路配置設計(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 Layout Design) 분야에서의 知的所有權이다. 이들 두 知的所有權에 관한 그 發生 배경, 특징 및 動向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法的 保護問題는 컴퓨터가 大量으로 一般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1970년대초부터 先進諸國에서는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 논의의 초점은 어떠한 法體系가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保護에 가장 적합한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著作權法과 特許法 그리고 새로운 체계를 지니는 特別法이 多角度로 검토되어 오다가 1980年 미국이 著作權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著作物로 認定하면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는 저작권법에 의하도록 국제적인 컨센스스가 모아져 갔다. 그 배경에는 물론 유럽諸國이 전통적으로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저작권법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認定하고 있었고, 또 美国이 강력하게 著作權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를 추진해온 때문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이에 관한 特別法 제정을 추진하다가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著作權法 개정을 통해 저작권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게 되었다.

産業化 과정에서 파생된 새로운 經濟財産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著作物로 認定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美国을 위시한 先進諸國들이 著作權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保護하려고 하는 데에는 몇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世界市場에 유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先進國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先進國들은 이들에 대한 신속한 법적보호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필요에 著作權法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새로운 法에 의하여 保護를 하려면 많은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國際條約을 형성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를 著作權法으로 하면 절차나 비용면에서 特許法이나 特別法보다 훨씬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著作權法에 의한 保護는 거의 無方式이므로 출원이나 등록이 불필요(필요한 경우에 限해서만 한다)하고 特許에서와 같이 공개의 의무도 지지 않는다. 그야말로 손쉽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先進國들이 著作權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와 같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開途國이나 後進國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고 이러한 恣意에 반대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著作權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가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버렸고 우리나라도 이 추세에 맞추어 저작권법의 별도 입법으로 87년 7월 시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과거처 판장)에 의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로 하였다.

한편 컴퓨터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著作權法에 의해서만 保護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기존의 特許法에 의해서도 保護가 가

능하다. 이것은 두 法體系의 상이에서 오는 것으로 즉, 著作權法이 프로그램 그 자체(표현형식)를 보호할 수 있고 特許法은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로 特許法에서도 프로그램 관련 發明의 保護에 관한 많은 判例와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바, 1975년 마련된 일본의 프로그램 관련 발명 심사기준이라던가 미국의 이에 관한 大法院 판례 등은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 관련 發明(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84년 컴퓨터 관련 發明 審査基準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아이디어가 특허법에 의해 保護될 수 있는 아니고 特許法에서 규정한 發明으로 成立한다고 認定된 것에 限해서만 可能하며 그러한 것은 전체 컴퓨터 프로그램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半導體集積回路 配置設計

半導體 集積回路의 配置設計(Layout Design)는 集積回路(IC) 製造에 있어서 반도체 기판상에 回路素子 및 配線의 2次元 또는 3次元의 배열을 말하는 것으로 集積回路에서의 새로운 知的所有權은 바로 이러한 것을 法으로 保護하려는 것이다. 원래 이러한 배치설계는 그 구성이 매우 단순하고 같은 종류의 IC에 있어서 배치설계는 거의 유사하므로 이런 정도는 이 분야에서 자명한 것으로(進歩性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特許法에서의 保護對象에서 제외되었던 것인데 최근들어 경쟁자에 의한 이러한 배치설계의 무단복사가 이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先進國 특히 美国에서는 새로운 知的所有權 보호대상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특별법 즉 반도체 칩 보호법이 84년 제정되었다. 이에 대응한 日本도 1985년에 半導體 集積回路 配置設計 保護法을 제정하였고 WIPO에서도 83년부터 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85년 제 1차 전문가회의(expert committee)에 조약안(Draft Treaty)을 제안하여 현재 토의중이다. 처음에는 著作權法에 의한 保護가 논

의되었으나 IC配置設計가 著作權 개념에 맞지 않고, 또한 著作權 保護에 관한 국제적 컨센스가 모아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著作權法에 의한 保護는 自國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美國은 일단 特別法으로 保護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조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WIPO가 이 問題를 83년 처음 다룬 이래 85~87년에 걸쳐 두번의 전문가회의 (expert committee)와 두번의 기술적 협의회 (technical consultation)를 가졌다. 여기에서 美·日을 포함하는 유럽先進國 대부분은 이와 같은 새로운 知的所有權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국제조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인도 등과 같은 開途國들은 그러한 知的所有權의 필요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國際條約의 성립을 反對하였으며 만약 그와 같은 條約이 불가피하다면 條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쳐 開途國의 特別한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 보장된 후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開途國들이 이와 같이 集積回路 配置와 관련한 새로운 知的所有權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또한 새로운 國際條約의 성립을 반대하는 理由는 이 분야의 기술과 시장이 선진국에 의해 거의 독점되어 있어서 自國의 産業 실정과 거리가 있고 또한 先進國으로부터의 자유로운 技術의 이전이 방해받을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에서 半導 體生產에 상당한 투자와 생산이 이루어져서 先進國에 大量으로 輸出을 해야하는 처지에서 이 분야에서의 새로운 知的所有權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世界各國의 知的所有權 保護 推移와 業界의 對應方案

오늘날 交通·通信 수단의 발달은 국제적으로 활발한 文化, 科學 및 技術의 교류를 가능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知的所有權 保護의 국제화도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더우기 과학기술의 진흥이 국가발전의 제 1의 길임이 認識되

면서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發明·發見의 장려를 위한 發明者·考案者의 법적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技術先進國들은 자국의 우수한 技術의 불법 유출 방지와 정당한 法的 保護를 보장받기 위해 知的所有權 保護제도의 凡世界的 확산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 一例로서 WIPO를 통해 開途國의 知的所有權 제도의 현대화를 지원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자국의 知的所有權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認定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先進國의 추세는 尖端技術에 대한 開途國의 빠른 추격으로 先進國과 開途國간의 기술격차가 좁혀짐에 따라 종전에 누렸던 기술우위에 의한 이익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先進國들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장기간 지속시켜 줄 수 있고 자국의 尖端技術의 부당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知的所有權 제도의 강화와 새로운 분야의 知的所有權 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대표적 실례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와 半導 體 集積回路의 配置設計의 법적 보호이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집적회로의 配置設計 등에 담겨있는 아이디어는 特許法에 의한 特許性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그 進歩性이 낮은 것으로 認識되어 特許 자체가 부인되었던 것인데, 그 경제적 가치가 높고 또한 그 개발의 투자 비용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이를 새로운 知的所有權 개념에 의해 保護하게 된 것이다.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先進國들은 자국의 우위를 점하는 새로운 기술분야가 개척될 때마다 이러한 종류의 知的所有權을 계속하여 개발해 나가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제도의 전세계적인 확산을 추구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대항하여 開途國들은 그와 같은 새로운 知的所有權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과 인도이다. 이들은 특히 半導 體 集積回路 配置設計의 국제적인 保護를 위한 조약 추진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외 輸出依存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先

進國들과의 무역마찰을 무릎쓰고 그와 같은 입장에 설 수는 없으며 先進國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실리적 대책을 아울러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業界의 대응책은 지적소유권에 대한 관심이 법제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민감한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동향 파악과 정보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知的所有權은 對外貿易去來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문제에 사전대비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외국에 輸出하는 물품이 특허 침해의 제소를 받아 세관에서 압류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던가 또는 外國社의 제소로 소송에 계류된다던가 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이미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일이 發生하기 前에 미리 知的所有權에 관한 지식을 갖고 대응해 둔다면 그와 같은 문제는 事前에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知的所有權 專擔管理部署를 설치하고 이 분야의 專門家로 하여금 知的所有權에 관한 情報를 수집하여 분석케 하고 또한 각국의 知的所有權 제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知的所有權과 관련한 국제 세미나, 강연회, 회의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그 동향을 잘 파악해 두는 것도 현명한 일일 것이다. 또한 知的所有權과 관련한 不公定한 입장에 처했을 때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여 官民合同으로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 밖에도 先進國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가 새로이 도입한 物質特許制度라든지 컴퓨터 프로

그램 보호가 실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業界에서는 더욱 이 제도를 예의 주시하고 외국 企業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줄이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結 語

이상에서 知的所有權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과 특히 최근에 새로운 知的所有權으로 주목받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法的保護와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의 法的保護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業界의 対応方案에 관하여 논의해 보았다. 그러나 知的所有權 전반에 걸쳐서 상세히 논의한다는 것은 이 분야의 범위나 그 전문성으로 미루어 도저히 짧은 지면에 다 옮기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관한 보다 상세한 파악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많은 자료들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知的所有權에 있어서 先進國과 開途國의 입장이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떻게 진행되어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 새로이 인식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半導體集積回路 配置設計의 법적보호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어떻게 정립하여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貿易摩擦에 효율적으로 대비해 나가고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강화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정부 단독으로만 해결해 나가는 어렵고 業界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오늘의 이 난국이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